

「서울디자인재단 정관」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- 서울굿즈, 민간기업(정관장)과 협력을 통한 건강식품 제작·판매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필요
 - 서울마이소울×정관장 협업상품 추진 (서울특별시, 2025. 7. 22.)
 - ‘서울시×정관장, 건강도시 서울의 활력 담은 협업 굿즈 2종 출시’ 보도 (서울특별시, 2025. 9. 12.)
-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자등록증 신규 영업신고·업종 추가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내용 변경, 추가

2. 주요내용

-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11항 ‘도매 및 소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’ 문구 추가
 - 11. 기타 출판업, 주차장운영업, 디자인상품 도·소매업 및 수출, 건강보조식품소매업(건강기능식품판매업) 도·소매업,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: 신규 영업신고 및 등록을 위한 제반 비용
 - 신규 영업신고 비용 등 73천원

[별지1]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[별지2]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1부. 끝.